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신규 도입되는 대형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4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3명, 순경 14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 재난안전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정원 14명(경사 2명, 경장 2명, 5급 3명, 7급 3명, 9급 4명) 중 12명(경사 2명, 경장 1명, 5급 3명, 7급 3명, 9급 3명)은 연구직(연구관 3명, 연구사 9명)으로 전환하며, 2명(경장 1명, 9급 1명)은 감축하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이전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의 위치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30. ~ 9.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인천해양경찰서의 위치란 중 “연수구”를 “서구”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2,583”을 “12,625”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387”을 “11,425”로 하며, 총경 이하 “11,378”을 “11,41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96”을 “1,20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84”를 “1,188”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업무	정원
정보외사국 1개 과	4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직종 전환 및 감축되는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4명(경사 2명, 경장 2명, 5급 3명, 7급 3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583</u>	<u>12,625</u>	+42
경찰공무원 계	<u>11,387</u>	<u>11,425</u>	+38
·	·	·	
·	·	·	
총경 이하	<u>11,378</u>	<u>11,416</u>	+38
일반직 계	<u>1,196</u>	<u>1,200</u>	+4
3급 또는 4급 이하	<u>1,184</u>	<u>1,188</u>	+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6